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 및 관련법 조항을 우리군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 및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적용의 완화 신설(안 제3조제3항)

-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⇒ 단독주택 및 농·어업용 창고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함.

나.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신설(안 제4조제6호)

-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정·개정에 따라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가능 건축물 ⇒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

다.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신설(안 제15조의2)

-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
- 위원회 구성 : 성주군 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으로 구성
- 임무 (법 제4조의4 제1항)
 -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
 -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
 → 복합민원에 따른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외 20개 항목
- 사무국설치 : 도시건축과
- 사무국장 : 건축관리담당

라. 가설 건축물설치기준 완화(안 제21조)

-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변경 2층 ⇒ 3층(안 제21조제1항 제3호)
- 공장부지 안에서 경량철골구조(판넬 등의 조립식구조를 포함한다) ⇒ 경량철골구조(부재 규격 100밀리미터이하) (안 제21조제2항제7호)

마. 건축물의 사용승인생략 건축물 신설(안 제21조의3)

- 산업단지내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사의 검사조서로 갈음

바. 건축지도원 개정(안 제24조제1항제3호)

-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 ⇒ 삭제

사.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신설(안 제25조의2)

-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
- 수시 및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(안 제25조의2 제1항)

⇒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

아. 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(안 제35조)

- 저장시설 :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(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.),석탄저장시설, 시멘트저장용 싸이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.

⇒ 저장시설 : 건조시설, 석유저장시설(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제외한다.), 석탄저장시설, 시멘트저장용 사일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.(단, 농·어업용 및 축산관련 시설은 제외한다.) (안 제35조제1항제2호)

- 유희시설 :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.

⇒ 유희시설 : 「관광진흥법」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로서 영 제3조의4에 의한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.(단, 간이·임시 및 이동식 형태의 시설은 제외한다.)(안 제35조제1항제3호)

4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(붙임 1 참조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2014. 10. 20. ~ 2014. 11. 09.)

(2) 규제심사 : 의견 없음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1건 (안제15조2항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구성) 의견 반영

-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주군 건축조례 제6조(구성)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킬 것을 요청함에 검토의견 반영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(안)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

○ 개정내용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지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,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운영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및 일부 조항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

○ 본 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부응하고 또한 상위법 규정에도 적정하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